의 안 번 호	2493	【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○ 제 출 일 자 : 2025. 11. 7.(금)
○ 제 출 자 : 홍영진 의원 외 9명
○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7.(금)
○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3.(수)

2. 제안이유

○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지원하고, 노인 대상 성 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4조)
○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실시(안 제5조)
○ 전문기관과의 협력(안 제6조)
○ 예산지원(안 제7조)
○ 실태조사 및 평가(안 제8조)
○ 시행규칙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○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노인의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이 과거에는 금기시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한 성인식과 평등한 의사소통, 성희롱 예방 등 성평등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필요하게 됨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

- 구청장 책무사항으로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, 정기적인 교육실시,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, 성폭력·성희롱 피해노인의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연 1회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 실시, 전문기관간 협력, 교육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

○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의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

○ 상위법인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

○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 거 법 규

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